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가. 제안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일부개정 2010. 7. 1 시행)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 (안 제3조)
 -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회 이괄신)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의뢰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2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2010년 11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

- 본 조례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31호) 이 2010년 3월 3일 일부개정 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시 실시되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소매인의 지정절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데 있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사실조사 후 사실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 우리시는 2002. 1. 1일부터 한국담배판매인회(제천단양조합)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무보수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0년 10월말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는 715개소로 2009년에는 74건, 2010년 10월말 현재 47건이 지정되었음.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업무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사실조사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민 서비스 제공과 위법·부당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연간 지정 건수는?(양순경 위원)

나. 답변요지 < 한방경제과장 이주식 >

- 연간 담배소매인 지정 건수는 연 90건, 월 8건 정도임. 한국담배 판매인회 제천단양조합에 위탁해 사실조사하여 왔으며, 관련법에서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임.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